

의안번호	제106호
의결 연 월 일	2011년 1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1년 1월 1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연월일 : 2011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11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과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제명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목적에 학교 등에 무상급식 필요경비 지원을 추가(안제1조)
-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 급식시설·설비비뿐만 아니라 급식 운영비까지 확대(안 제2조제2호)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농산물”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로 용어변경(안 제2조제3호다목)
- 우수식재료 품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추가(안 제2조제3호사목)
-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 우선 지원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라 도지사의 급식경비 지원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급식경비 신청절차 일원화를 위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도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신청토록 변경(안 제6조제1항)
- 위원회 심의사항 중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재정분담방안”을 “학교급식 등 예산지원 방안”으로 통합(안 제8조제1, 2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 등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원조달 및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제4조 각 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 등 예산지원방안
2.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3.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개선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이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p> <p>3. (생략)</p> <p>가. (생략)</p> <p>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p> <p>다-바. (생략)</p> <p><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 등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p> <p>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p> <p>다-바.(현행과 같음)</p> <p>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1. (생략)</p> <p>2.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 분담방안</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의 기관별 재원조달 및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4. (생략)</p> <p><신 설></p> <p>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 경비 중 <u>일부를</u>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u>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u>, 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지원계획 2. <삭제> 3. (생략) 4. (생략) 5. (생략) 	<p>제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한다.</u></p> <p>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 경비 중 <u>전부 또는 일부를</u>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u>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u>, 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급식 등 예산지원 방안</u>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7조 (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